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28

발의연월일 : 2022. 12. 29.

발 의 자 : 윤주경・양금희・전봉민

정우택 · 조경태 · 최승재

태영호 · 하영제 · 홍문표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지원조직 중 하나로 법률상 직무 범위에 따라 각종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른 입법지원조직과 달리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한 법률상 자료요청 권한이 없어관련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을 포함한 국회차원의 전문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기록연구직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제상 구조 가 필요하나 현행 국회도서관법에는 기록연구직이 과장급 이상의 보 직을 맡을 수 없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의 경우 연구직이 실·국장, 과장 등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법률상 구조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국회도서관의 자료요청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회도서관 의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도서관의 실·국장 및 과장 등의 보직에 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을 "1급·2급 또는 연구관, 국장은 2급·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하고"를 "각각 보하고"로, "2급부터 4급까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을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나"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관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조직) ①・② (생 략)	제5조(조직)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실장은 <u>1급 또는 2급, 국장</u>	③ <u>1급·2급 또는 연구</u>
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u>관,</u> 국장은 2급·3급 또는 연구
<u>또는 4급</u> 인 일반직국가공무원	관, 과장은 3급·4급 또는 연구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은 제외한다)으로 <u>보하고</u> , 담당	<u>각각 보하고</u>
관은 2급부터 4급까지인 일반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
<u>는</u> 2급 상당부터 4급 상당까지	외한다)이나
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	
다. 다만, 3급 이상 일반직국가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위는 제외한다) 중 그 소관 업	
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	
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	

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 (생략)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관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